

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』

《檢討報告書》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

- 지방세법이 2005. 1. 5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조례 제17조, 제18조, 제22조 상의 지방세법 근거조항을 개정조항으로 수정하고,
-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이루어진 보유세제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제28조, 제29조의 종합 토지세 부분을 삭제하며
-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주택분재산세, 건물분재산세, 토지분재산세로 부과되며 등에 따라 개정안 제3조, 제19조, 제21조, 제23조에서 종합토지세 부분을 삭제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의 적용기준을 보완 하였으며

- 개정된 지방세법이 재산세 세율단계를 변경함에 따라 제21조의 2에서 표준세율을 정비하였습니다.

□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개정안 제3조 및 제3절 종합토지세편 제28조, 제29조 삭제안은 지방세법 제5조 제2항 지방세의 세목에서 종합토지세가 삭제되었으므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.
- 개정안 제17조, 제19조, 제23조는 지방세법 제181조, 제182조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토지가 포함되어 조문상에 “토지”를 삽입한 것이며
- 개정안 제18조, 제22조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조문상 근거 조항을 “법 제184조”에서 “법 제186조”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
- 개정안 제21조(과세표준), 제21조의 2(세율)는 지방세법 제111조, 동법 제187조, 동법 제188조, 동법 제189조, 동법시행령 제138조, 동법시행령 제139조 등의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과세표준 및 세율을 규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.
- 다만 개정안 제21조의 2 제1호 다목의 (3)에서 “제1호 및 제2호외의 토지”는 입법형식상 “제(1) 및 제(2)외의 토지”로 자구정정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.

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
있으시길 바라며,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조례(안)에
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5. 5. 6

보고자 : 김찬재